

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 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(시장등)은 동조례의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

- 동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관계공무원이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
- 동조례의 출석범위에 “시장”을 삽입하는 것은 동조례의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이중으로 규정하게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시장을 대리하여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“시장”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※ 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서 규정 한 지방자치단체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조례의 범위에 규정한 것임.

4. 동조례 개정 관련 참고사항

- 제127회 임시회에 개정되어 2001년 6월 2일 공포된 동조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는 서울시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임법취지에 반하고 위임한계를 일탈하였다는 판단하에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재의요구 하였음.
- 아울러 기존에 이미 존치하고 있던 동조례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“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도” 위에 제시한 법 제37조의 임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음.
-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재의요구를 하고 있지 않으나 금년 정례회에서 다시 동조례를 개정할 시 또 한차례 행자부의 재의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.

5. 행정자치부 재의요구에 대한 검토의견

- 행정자치부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강조하나 서울시의 동조례는 관계공무원등의범위로서 이에 지방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 법인의 임원을 포함하고 있음.
-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경우는 스스로 출석하여 업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여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경우와 의회의 요구로 출석하여 답변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바 시정의 보다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출석범

위를 공무원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동조례의 취지에 맞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- 행정자치부는 지방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법인은 경영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는 기업성격을 감안할 때 행정기관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감시·견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임직원에 대한 출석요구는 증인 또는 참고인 자격으로 증언 또는 진술을 통하여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동조례의 취지는 의회의 위상과 집행부의 책임성 확보차원에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장과 교육감을 대리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공무원의 경우 3급 이상, 지방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법인의 경우 인원으로 정하고 있으며, 행정사무감사의 경우에도 별도로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요구하지 않는 한 해당 지방공사·공단 및 출자·출연 법인의 업무상황에 대한 답변은 임원이 해야한다는 취지임.

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및 서울특별시교육청”으로 하고, 동조동항제 5호 중 “제41조 및 제43조”를 “제34조 및 제36조”로, “교육장, 교육기관장”을 “교육기관장, 교육장”으로 하며, 동조동항제7호 중 “법 제137조 및 제138조”를 “법 제137조”로 하고, 동조동항제8호 중 “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/4 이상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2001主要業務現況報告